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0. 2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0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민·관·학 교육지원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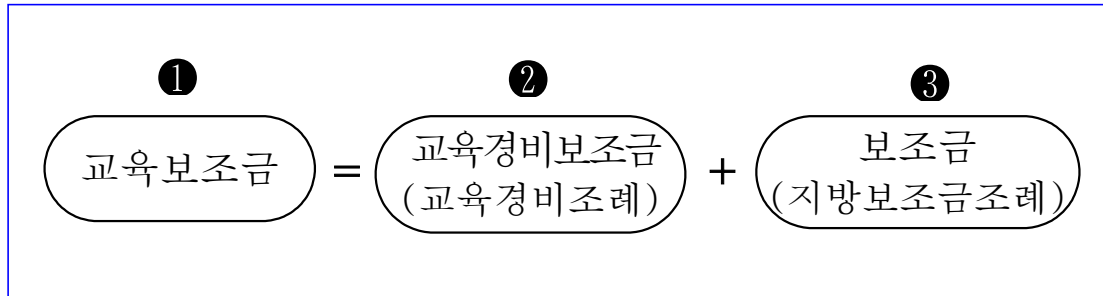
나. 주요내용

-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교육보조금의 지원 (안 제5조)
-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(안 제7조)
- 교육협력관 운영 (안 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사업,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사업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기존의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를 대체하고 기능을 보강하여 영등포구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였고, 조례 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적용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함. (안 제1조~제3조),
- 또한,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·시행, 교육보조금 지원, 교육보조금 평가·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, (안 제4조~제6조)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·기능, 운영협의회 구성,위원의 임기,위원의 위촉 해제,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(안 제7조~제15조) 본문 15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됨.
-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, 2016 영등포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, 지역사회 민·관·학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주민복지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해 보임.
- 다만, 안 제2조,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보조금의 지원 규정은 다른 조례와 충돌하거나 권한을 침해 하는 등 법체계를 훼손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.
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안 제2조에서 “교육보조금”이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교육경비 조례”라 한다)에 따른 교육경비보

조금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이하 “지방보조금 조례”라 한다)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하고,



-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¹⁾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①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다른 조례(교육경비조례, 지방보조금조례)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는 ②교육경비보조금 및 보조금 지원 대상을 본 조례안에서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됨.
 - ②교육경비 보조금은 「교육경비 조례」 제2조에 따라 급식시설·설비사업 등 8개 사업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, ③보조금은 「지방보조금 조례」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5개 사업과 그 밖의 공모사업을 지원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와 같이 “교육보조금”의 지원대상은 각각의 해당 개별 조례인 「교육경비 조례」와 「지방보조금 조례」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서 “교육보조금”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다른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의 법 이해를 어렵게 하는 등 부적합한 사례임.
- 따라서, 당초 조례 개정의 취지가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자체적인 보조금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「교육경비 조례」와 「지방보조금 조례」에 근거한 “교육보조금”의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함.

1) 유치원·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다른 조례(교육경비조례, 지방보조금조례)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과 보조금을 본 조례안의 “교육보조금”으로 규정할 경우 다른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의 법 이해를 어렵게 하는 등 부적합하여 “교육보조금”의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2조는 삭제하며,
-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,
- 안 제3조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‘구’라 한다)”로 하며
- 안 제4조제2항 중 “교육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하며
- 안 제5조제1항 중 “지원대상자”를 “유치원·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”로 하며,
같은 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보조금”을 각각 “보조금”으로 하며,
- 안 제5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하며
- 안 제6조의 제목중 “교육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관련 16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6. 10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수정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서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과 보조금을 본 조례안의 “교육보조금”으로 규정할 경우 다른 조례의 권한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여 주민의 법 이해를 어렵게 하는 등 부적합하여 “교육보조금”의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2조는 삭제하며,
-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,
- 안 제3조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‘구’라 한다)”로 하며
- 안 제4조제2항 중 “교육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하며
- 안 제5조제1항 중 “지원대상자”를 “유치원·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”로 하며,
같은 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보조금”을 각각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- 안 제5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”를
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하며
- 안 제6조의 제목중 “교육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조는 삭제하며,
-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,
- 안 제3조 중 “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‘구’라 한다)”로 하며
- 안 제4조제2항 중 “교육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하며
- 안 제5조제1항 중 “지원대상자”를 “유치원·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”로 하며,
같은 조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보조금”을 각각 “보조금”으로 한다.
- 안 제5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”를
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하며
- 안 제6조의 제목중 “교육보조금”을 “보조금”으로 함

수 정 안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와 서울특별시남부 교육지원청,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관할구역 내 각 급 학교 및 학부모,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 로 협력하여 아동·청소년이 행 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교육보조금”이란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「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교육기관 등 을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 금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에 따라 민간 등이 자율적 으로 수행하는 교육지원 사 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 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.</p> <p>2. “지원대상자”란 유치원·각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명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2조(정의) 〈삭 제〉</p>

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·시행)

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지원기본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
2.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지원사업
3. 교육부·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교육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'구'라 한다)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 급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·시행)

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
청”이라 한다)의 교육정책
과 연계사업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교육보조금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보조금 지원 절차, 정산, 감독 등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교육보조금의 평가·관리) 구청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해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

제4조(보조금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치원·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, 정산, 감독 등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보조금의 평가·관리) (개정안과 같음)

제6조(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) (개정안과 같음)

협력지원운영협의회(이하 “운영
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
에 관한 사항
2. 관내 각 급 학교 및 교육
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
관한 사항
3.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
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 교육발전을 지
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운영협의회 구성) ① 운영

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
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
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
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
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
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
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교
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
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
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
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
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
이 위촉한다.

제7조(운영협의회 구성) (개정안
과 같음)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
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업무
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
원 2명
 2.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
 3.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
풍부한 학부모, 교사 및
전문가 5명 이내
- ④ 위원장은 운영협회의 사무
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
을 두되, 간사는 구 교육지원업
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
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
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
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
의 임기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
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
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
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하거나, 스스로
사퇴를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,
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
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
정되는 경우
3. 전보, 퇴직 등의 사유로 해

제8조(위원의 임기) (개정안과
같음)

제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(개정
안과 같음)

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, 운영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운영협의회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) ①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②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운영협의회 회의 등) (개정안과 같음)

제12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) (개정안과 같음)

은 운영협회의 의결을 거쳐
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운영협회의와
실무협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
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
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
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교육협력관) 구청장은 다
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
하여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
학사 및 학교의 장이 추천한 교
사를 구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할
수 있다.

1. 지원계획 수립·집행에 대
한 자문
2. 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
간 협력사업 발굴
3. 구의 각 급 학교 협력사업
에 대한 협조
4. 그 밖에 구의 교육지원 관
련 정책에 대한 자문

제13조(수당 등) (개정안과 같
음)

제14조(교육협력관) (개정안과
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민·관·학 교육지원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
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
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: 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
조례’로 변경

나. 주요내용

- 1)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2) 교육보조금의 지원 (안 제5조)
- 3)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(안 제7조)
- 4) 교육협력관 운영 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- 2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」
- 3)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,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5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의견 없음)
- 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 없음)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6.09.08~2016.09.28, 20일간) 결과 :
의견없음

2) 신·구 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

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
원청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 각 급 학교 및 학부모, 지
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·청소년이 행복한 교육환경
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교육보조금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교
육기관 등을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
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
을 말한다.
2. “지원대상자”란 유치원·각 급 학교의 장과 교육지원사업을 수행
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
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

급 학교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에 적용한다.

제4조(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지원기본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교육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
2. 지역과 연계된 학교교육 지원사업
3. 교육부·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교육정책과 연계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교육보조금의 지원)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육보조금 지원 절차, 정산, 감독 등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6조(교육보조금의 평가·관리) 구청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다음 해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교육 협력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(이하 "운영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관내 각 급 학교 및 교육 관련 민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
3.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구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운영협의회 구성)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(이하 “교육장”이라 한다)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과 교육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
2. 관내 학교의 장 4명 이내
3.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학부모, 교사 및 전문가 5명 이내

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구 교육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교육지원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하거나,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전보,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, 운영협

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운영협의회 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실무협의회 및 분과협의회) ①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교육협력관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 및 학교의 장이 추천한 교사를 구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1. 지원계획 수립·집행에 대한 자문
2. 구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간 협력사업 발굴
3. 구의 각 급 학교 협력사업에 대한 협조
4. 그 밖에 구의 교육지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본다.

제3조(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